

Article 12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it enters into force, and then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ccessive three-year periods, unless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relevant period.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as if in force in respect of any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not yet completed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on this 26th day of March 2019,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소방·안전, 식품위생,”을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으로, “각각 1시간씩”을 “1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를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농어촌민박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농 어 촌 민 박 사 업</p>	<p>기본시설</p>	<p>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p> <p>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p> <p>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p>
--	-------------	--

<p>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p>	<p>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도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p>
<p>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p>	<p>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별표 3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p>3. 소방안전</p>	<p>가. 소화기, 피난구유도등(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난유도표지(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다.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p>
----------------	---

별표 3의2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4.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p>	<p>가.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나.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것</p>
---------------------------	--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다.